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3. 17 선고 2019가단647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 2020. 12. 16

판결 선고 2021. 3. 17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지분에 대하여 2017. 9. 17.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 12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8. 3. 22. 접수 제281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면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을 전전 양수한 채권자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D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26. 양수금 31, 552, 795원 및 그 중원금 10, 665, 818원에 대하여 201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 28. 확정되었다.

나. 망 파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즉, 대구 서구 G 대 12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대지와 주택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의 소유자로서 2017. 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D, 피고, H, C, I, J 6인이 존재하였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9.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망인의 1/2지분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후 피고 앞으로 위 각 1/2지분에 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D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를 비롯하여 K,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금전채무가 존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판결 등 참조).

따라서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대법원 2007.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등 참조).

D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거나 이 사건 분할협의로서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분할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는 D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성립한다.

나.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1)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5년경 H과 C가 대지 구입 비용과 건축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여 그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H 앞으로 1/2지분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되었던 것이고, 나머지 자녀 네 명이 주장할 만한 기여분이 거의 없어 원래는 C가 망인의 1/2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맞지만 이 사건 분할협의로서 피고 앞으로 망인의 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피고가 C에게 그 대가로 9,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11. 11. C에게 9,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송금액이 이 사건 분할협의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H과 C가 이 사건 대지 매수자금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을 제5호증 내지 7호증을 접수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2차례의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함으로써 결국 위 증거들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D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12지분(= 망인의 지분 1/2x D 상속분 1/6)에 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문현정

별지